

1. 개정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류를 마련하고,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신청 절차,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서식을 마련함

나.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별지 제16호의3 서식 개정)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된 장비 내역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 내역에 대한 확인 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고확인증에 표기된 장비 명세가 변경신고한 내역인지 기존 장비와 변경 신고한 내역을 포함한 신고 당시 기준의

전체 장비 내역인지 불분명하는 등 서식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기존 별지 제16호의3 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 등록 시 장비 내역에 대해 장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 해당 장비명세서를 수정 발급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함

다.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32조 신설, 별표 6 신설, 별표 7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등록 신청이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를 같이 발급한다.

제26조제7항 중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를 “**장비명세서를 재발급 해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표준계약서) 법 제27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별표 6

2.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 법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감정사업

· 검량사업: 별표 7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u> <u>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u>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 ④ (생략)	<u>표 등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 <u>1. 사업의 개요</u> <u>2. 종사자의 현황</u> <u>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u> <u>4. 사업개시 예정일</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u> ⑤ <u>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등록 신청이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 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 ④ (현행과
--	---

한다.

<신 설>

---.

제32조(표준계약서) 법 제27조의5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운
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
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
업: 별표 6
2.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항만
종합서비스업, 법 제4항에 따
른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감정사업·검량사
업: 별표 7

항만하역사업 표준계약서

____(선사, 화주 등 항만하역업무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____ (항만하역 업무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와 ____항 제__부두에서의 하역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요청한 하역작업에 대해 “을”이 이행하는 하역작업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하역의 범위) 본 계약에서 하역작업이란 통상적인 선내 하역작업, 부선 양적하역작업, 육상작업, 예·부선 운송작업 및 부대 하역작업들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가한 내용에 따른다.

제3조(개별협정) 하역품목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목적 및 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개별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본 계약서에 개별 협정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 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__년 __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당초 계약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무사항) ① “갑”은 하역작업의 준비 및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화물 및 선창 상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② “갑”과 “을”은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2. “을”은 하역작업 수행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관리자를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역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여 선박 운항 및 화물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작업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 및 피고용인 등에게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은 계약 이행 시 관계 법령 및 상호 합의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하역방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취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배상책임) ① “을”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손상사고 및 선박의 기구 또는 기물 손상에 대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기인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또는 숨은 하자
2. 제5조에 따른 “갑”의 의무 해태
3.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
4. “갑”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과실, 부주의

② 양 당사자 간 귀책사유 여부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 등을 통해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액을 확정된 후 정산·변제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 및 정산) ①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하역요금 등 대가(代價)의 지급 요청 시 “갑”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득한 작업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갑”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을”이 제1항에 따라 작업보고서 및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종류·수량·적재상태에 대하여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을”은 하역작업 완료 후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요금표를 작성하여 익월 ____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대가(代價)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지급 요청한 대가(代價)를 요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을”이 동의한 경우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발행 어음의 지급만기일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⑤ “갑”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을”에게 지연이자(이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을 따른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1. 지급정지, 파산, 사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철회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계약변경)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

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방 당사자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상대방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계약 내용과 배치되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부당거래 요구의 금지) ① 양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지속·갱신을 목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장비 및 역무의 공급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양 당사자는 계약의 변경 없이 본 계약 내용 이외의 업무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해제) 양 당사자는 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해산, 영업의 폐지, 변경, 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당사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추가비용) 하역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의 확인을 받아 “을”이 대납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단, “갑”은 “을”의 대납조건과 동일하게 비용을 정산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비밀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재판 또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년까지 유효하게 지속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제1항 단서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공개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계약서 조항 외의 사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한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16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내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하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하역작업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갑”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위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서 명)

수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서 명)

< 별첨 >

[주]○○○ 항만하역요금

1. 기본요금

가. 일반하역요금

항 목	구 분			적 요 용 금	소 계	비 고
	품 목	단 위	수 량			
1. 선내 하역						
2. 부선 양적 하역						
3. 육상 작업						
4. 예부선 운송						
5. 원목편성 예인						
6. 산화물 포장						
7. 이 송						
8. 기 타						
합 계						

나. 특수하역요금

항 별	구 분	품 목	단 위	수 량	적 요 용 금	소 계	비 고
합 계							

다. 연안하역요금

하 태 별	품 목	단 위	수 량	적 용 요 금	소 계	비 고
합 계						

2. 할 증 요 금

종 별	내 용	품목	단위	수량	적용요금	할증율	소 계
합 계							

3. 기 타 요 금

종 별	내 용	품목	단위	수량	적용요금	소 계
1. 정액요금						
2. 협정요금						
합 계						

항만종합서비스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검수사업 · 검량사업 · 감정사업

표준계약서

000(검수 · 감정 ·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업무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000(검수 · 감정 ·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업무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와 _____(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요청한 업무를 “을”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부분이 본 계약의 본질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부분을 제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본다.

⑤ 양 당사자 간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계약의 변경 또한 양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른다.

제3조(의무사항) ① “갑”은 “을”의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화물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직원 및 피고용인 등에게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③ “을”은 작업 수행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관리자를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작업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및 장비 배치

2. 작업인력의 작업계획(안전관리계획 포함) 및 작업내용 숙지 및 철저한 이행

⑥ “을”은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작업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을”은 작업 수행 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개별협정) 작업여건의 특수한 사정 등에 따른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목적 및 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개별 계약조건을 추가하거나 본 계약서에 개별 협정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 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____년 ____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당초 계약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가지금 및 정산)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代價)는 본 계약 체결 시 “을”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이익, 기타경비, 안전·보건관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 중 임금, 금리, 물가 등의 변동으로 대가(代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작업 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대가(代價)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갑”은 요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대가(代價)의 지급 요청 시 “갑”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득한 작업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갑”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을”에게 지연이자(이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을 따른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을”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선박의 기구 또는 기물 손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기인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1. 화물, 선박 등의 고유한 결함 또는 숨은 하자
2. 제3조에 따른 “갑”의 의무 해태
3.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
4. “갑”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과실, 부주의

② 양 당사자 간 귀책사유 여부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 등을 통해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액을 확정된 후 정산·변제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발생한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체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대가(代價)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8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공권력의 발동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취득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부당거래 요구의 금지) ① 양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지속·갱신을 목적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

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장비 및 역무의 공급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양 당사자는 계약의 변경 없이 본 계약 내용 이외의 업무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일 이후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액 등은 귀책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양 당사자는 타 상대방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즉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해산, 영업의 폐지, 변경, 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5.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 당사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6.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한 수준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추가비용) 계약 이행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의 확인을 받아 “을”이 대납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단, “갑”은 “을”의 대납조건과 동일하게 비용을 정산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비밀을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재판 또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년까지 유효하게 지속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비밀정보를 제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할 비밀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계약서 조항 외의 사항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위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서 명)

수탁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서 명)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⑤항만종합서비스업을 등록하여 수행하려는 사업(모두 표기)		☐ 검수사업, ☐ 검량사업, ☐ 감정사업 ☐ 항만용역업(줄잡이), ☐ 항만용역업(화물 고정), ☐ 항만용역업(통선), ☐ 항만용역업(선박 경비), ☐ 항만용역업(선박 청소), ☐ 항만용역업(오물 제거), ☐ 항만용역업(선박 소독), ☐ 항만용역업(폐기물 수집·운반), ☐ 항만용역업(선박 칠), ☐ 항만용역업(맑은 물 공급) ☐ 선박연료공급업, ☐ 선박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 선용품공급업, ☐ 기타	
⑥자본금			
⑦항만명(사업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1부 4. 기타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단, 신청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수입인지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

등록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5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사업자 정보	상호명/선박연료공급업 등록번호		등록 항만명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비 상세	선명(차량번호)	톤수(적재량)	진수(進水)연월일 (제조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여부	소유 형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